

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4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3. 9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월남전(64.7.18~73.3.23)과 국내전방복무(67.10.9~70.7.31)중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(안제2조 제2항)

■ 개정근거

- 경남도 세정13400-10644호(2003.5.17)
- 경남도 세정13400-10825호(2003.6.25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”을 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,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”으로 하고, “국가유공자”를 “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<u>국가유공자</u>의 직계존·비속, <u>국가유공자</u>의 직계비속의 배우자, <u>국가유공자</u>의 형제·자매의 명의로 등록(<u>국가유공자</u>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<u>국가유공자</u>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(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-----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)(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